

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07일

나운3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양 *호	양 *호 1981-01-23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제3길 (미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27
차 *범	차 *범 1965-05-05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(미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27